

안양시 훈령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규정

제정 2019. 9. 9 훈령 제70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 훈령 중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안양시 공공일자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」의 개정) 안양시 공공일자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3조(「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」의 개정) 안양시 명예시민과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